

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 추천요령

통합공고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수출입 추천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7년 4월 18일
시단법인 대한석유협회장

제 1조 (추천 대상품목) 통합공고 별표 1, 별표 2의 품목별 수출·수입요령상 해당품목으로 한다.

제 2조 (수출입 추천대상자) 석유수출입 추천대상자는 석유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한 자 (이하 “석유수출입업자”라 한다)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.

1. 수입추천대상자

- 가. 원유 : 석유수입업자
- 나. 프로판 및 부탄: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
- 다. 기타의 석유 (원유, 프로판 및 부탄을 제외한 석유): 석유 수입업자,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한국전력공사

2. 수출추천대상자: 석유수출업자

제 3조(포괄추천) ① 협회장은 수출추천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월단위로 수출물량을 유종별로 포괄추천할 수 있다.
② 포괄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의 유종별 수출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 포괄추천을 받은 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수출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포괄추천을 초과하여 수출하였을 때에는 2개월간 포괄추천을 받을 수 없다.
④ 협회장은 포괄추천을 받은 자의 수출계획이 변경되어 당해월에 수출추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추천한다.

제 4조 (추천검토사항)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출입 추천한다.

- ① 연도별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
- ②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각 호 및 동조 제 3항의 업체별 계획
- ③ 기타 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 등

제 5조 (구비서류)

- ①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추천신청서
- 1. 수입추천신청서 3부
- 2. 물품매도확인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
- 3. 수입대행계약서 1부(수입대행시에 한함)
- ② 석유제품의 수출추천 신청서
- 1. 수출추천신청서 3부
- 2.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(포괄추천시 생략)
- 3. 수출대행계약서 1부(수출대행시에 한함)
- 4. 월별 유종별 수출계획서 1부(포괄추천시에 한함)

제 6조(수출입추천서의 반납) 수출입추천서 제발행 신청시와 수출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추천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7조(처리기간) 추천서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로 한다.

제 8조(보고) ① 협회장은 월별 수출입추천실적을 매 익월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② 협회장은 매분기 완료후 15일 이내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에 수입 추천사항을 통보한다.

부칙

제 1조(시행일) 본 요령은 199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